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2225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지
담당변호사 이찬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313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5. 5. 27. 보증금액 338,400,000원(그 후 3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6. 5. 27.(그 후 2020. 5. 2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 ② 2016. 5. 25.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2017. 5. 24.(그 후 2020. 5. 2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주어,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C의 대표이사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 1) C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5. 7. 중소기업은행에 631,463,9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원고는 C과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956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0. 6. 2. “C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173,514원 및 그 중 631,463,9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2020. 6.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1) 피고는 B에게, 2018. 11. 22. 50,000,000원, 같은 달 23. 49,980,7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2) B는 2019. 7.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3135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이후 피고는 B에게, 2019. 7. 29. 50,000,000원, 같은 해 8. 5.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B의 채무초과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채무변제력 확보를 위한 신규자금 유통에 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B와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B에게 2018. 11.경 99,980,700원을 대여하였고, B가 추가로 1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B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이천시		임야 516㎡
2. 이천시		임야 997㎡
3. 이천시		임야 1028㎡
4. 이천시		임야 936㎡
5. 이천시		임야 696㎡
6. 이천시		임야 800㎡
7. 이천시		임야 309㎡

1)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313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8507 판결 등 참조).